

입출금 이체 및 대체 약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용어의 정의) ③ "이체입출금"이라 함은 회사 고객계좌와 타기관 계좌와의 자금을 입출금 하는 것을 말한다. ④ "대체입출금"이라 함은 회사 고객계좌와 회사내 타계좌와의 자금을 입출금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이버 이체/대체 입출금"이라 함은 자금거래를 고객이 직접 사이버(PC, 모바일)에서 함을 말한다. ⑥ "유선 이체/대체 출금"이라 함은 회사 직원과 유선을 통한 약정계좌로의 출금을 신청하는 자금거래를 말한다. ⑦ "약정계좌"라 함은 회사가 정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회사계좌를 말한다. ⑧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이체한도 범위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하고,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1일 누적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③ "약정계좌"라 함은 회사가 정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회사계좌를 말한다. ④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약정계좌)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이체한도 범위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하고,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약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1일 누적 기준)한도 내에서 고객이 설정한 이체한도 범위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⑤ "이체대체 입출금"이라 함은 회사 고객계좌와 타기관 계좌와의 자금을 입출금 하는 것을 말한다. 1. 약정계좌 이체출금 : 사이버(PC,모바일) 또는 유선으로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계좌(약정된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약정계좌 이체송금 : 사이버(PC, 모바일) 에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하지 않은 은행계좌	● 순서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7 항 3 항 순서변경 ● 중복내용 통합 현행 3 항, 4 항 5 항, 6 항 통합 및 각호에 부연설명 ● 개정안 4 항 약정계좌로 표현변경

한도 내에서 고객이 설정한 이체한도 범위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약정계좌 대체출금 : 사이버(PC, 모바일) 또는 유선으로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계좌(약정된 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약정계좌 대체출금 : 사이버(PC, 모바일) 에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하지 않은 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5. 법인의 경우 약정계좌 이체만 가능하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⑨ "소액이체서비스"라 함은 사전에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일 누적금액 100만원 미만 자금이체/대체시 일회용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간단히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인미약정이체서비스"라 함은 OTP발급 고객에 한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약정 계좌로도 사이버이체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 (추가) 신규서비스 설명
제3조(서비스의 신청(변경)내용 및 해지) ②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제3조(서비스의 신청(변경)내용 및 해지) ②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 업무변경 : 사이버이체약정업무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으로 대체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회사 소정양식의 서면 신청서에 따라 ‘사이버 이체/대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회사 소정양식의 서면 신청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신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참고한다.	
제3조(서비스의 신청(변경)내용 및 해지) ③ ‘사이버 이체/대체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가족명의 또는 타명의도 가능)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된(지정된) 계좌로의 이체 및 대체 처리가 가능하며, 입금계좌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체 및 대체 처리에 제한이 없다. 다만, 업무제휴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설된 ‘은행연계계좌’의 경우에는 사이버 이체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휴금융기관 계좌와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간의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신청(변경)내용 및 해지) ③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신청(변경)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변경) 제 3 조 서비스의 신청 및 해지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며, 사이버이체약정업무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업무로 대체됨. 또한, 입금계좌에 대한 설명은 제 2 조 용어의 정의 내용과 중복되어 신청방법만 안내함.
제3조(서비스의 신청(변경)내용 및 해지) ⑤ ‘유선 이체/대체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제3조(서비스의 신청(변경)내용 및 해지) ⑤ ‘약정계좌 이체출금, 약정계좌대체출금, 약정계좌 유가증권 대체 거래를 위한 약정계좌의 등록 신청(변경) 및 해지는 계좌별 또는 고객별로 할 수 있으며 약정계좌의	● 현행 5 항 6 항 통합 ● 유선이체대체업무 변경으로 인한 용어변경 및 부연설명 추가 ● 고객별 변경 및 해지 업무 변경으로 인한

⑥ '유선 이체/대체약정'은 고객별로 신청할수 있으며 약정계좌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별 신청시 개설된 모든 계좌 및 타기관 약정계좌는 신청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 약정계좌가 적용된다. 2. 고객별 해지시 기 등록된 계좌에 대하여는 약정계좌가 계속 적용되며 해지 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는 약정 계좌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객별 신청 시 동일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및 타기관 약정계좌는 신청 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 약정계좌가 자동 적용된다. 2. 고객별 약정에서 계좌별 약정으로 변경 시 변경 시점 등록된 약정계좌가 계속 적용되며 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는 약정 계좌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고객별 해지 시, 해지 요청한 은행 계좌 또는 당사 타명의 계좌를 일괄 해지 처리 한다.	수정
	제3조(서비스의 신청(변경)내용 및 해지) ⑥ 소액이체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사이버(PC,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⑦ 법인미약정이체서비스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소정의 양식을 작성 후 신청할수 있다.	● (신설) 신규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제4조(서비스의 내용 및 고객확인) ① 고객이 제3조 제2항의 '사이버 이체/대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명의 또는 타인명의(제3조 제3항에 따라 입금계좌를 사전에 지정한	제4조(서비스의 내용 및 고객확인) ①고객이 제3조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명의의 금융계좌로 현금 이체/대체 거래 및 유가증권등의 이체/대체거래를	● 사이버이체약정 신청업무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업무로 대체 ● 제 2 조 용어정의 내용과 중복내용 삭제

경우에는 지정된 고객명의(혹은 타인명의) 계좌에 한함) 의 금융기관계좌로 현금 이체/대체 거래 및 유가증권등 의 이체/대체거래를 할수 있다.	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및 고객확인) ③ 약정계좌는 사이버이체 시, 1등급한도를 자동 부 여하며 보안매체 입력을 생략한다. 단. 신시스템 이전 개설된 계좌의 경우 고객이 설정한 한도내에 이체가 가능하며, 타명의 약정계 좌, 또는 법인계좌의 경우에는, 보안매체 정보 입력 을 생략하지 않는다.	● (신설) 부연설명 조항 추가
제6조(예약이체) ③ 이체출금 처리시점에서 이체출금계좌의 출금가 능한 현금이 이체신청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예약 이체출금거래가 처리되지 않으며, 예약이체 금액이 회사가 정한 최대한도 금액<별첨1>을 초과하거나 고객이 회사와 사전에 정한 한도금액을 초과할 경 우에는 초과된 금액은 출금 처리되지 않는다.	(삭제)	● (삭제) 업무변경으로 인한 제 6 조 3 항 삭제 ● 사전에 고객이 약정하여 배치처리로 출금하는 업무의 경우 한도차감에서 제외함.

제11조(사이버 이체약정의 종료 및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사이버 이체대체약정' 체결시 지정한 계좌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전에 종료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사이버 이체대체약정' 체결 시 지정한 회사의 증권계좌가 통합 또는 폐쇄되었을 경우 '사이버 이체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만, 고객이 증권계좌의 통합 또는 폐쇄를 해제한 경우에는 '사이버 이체약정'이 자동으로 부활한다.	(삭제)	● 현행 제 11 조 삭제 ● 사이버이체약정업무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업무로 대체 (전자금융거래서비스약관 별도 존재함)
	제12조(현금자동지급기 입·출금) ③ 모바일통장의 경우, 제휴된 VAN사 ATM에서 CD출금이 가능하며 한도는 별첨1)를 따른다	● 모바일통장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신규신설
제20조((구)미래에셋증권 이체 및 대체) 1. 미래에셋대우 기준으로 전산이 통합되어 (구)미래에셋증권에서 처리하던 이체대체약정 서비스는 고객이 별도로 해지 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는 미래에셋대우의 이체대체약정 서비스(사이버입금계좌 미지정업무)와 동일하여 미래에셋대우 기준으로 처리된다.	(삭제)	● 구)미래에셋증권 약정 별도관리안함. 전계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약관내용으로 대체함.

2. (구)미래에셋증권 이체대체약정 서비스 등록 고객 중 미약정 계좌로의 이체 및 대체출금(고) 업무 유지된다. (단, 보안매체 발급 고객 한이며 미약정한도에서 차감) 3. (구)미래에셋증권 이체대체약정 서비스 등록 고객 중 보안매체 발급 없어도 약정계좌로의 이체 및 대체출금(고) 업무 유지된다.(단, 약정한도에서 차감) 4. (구)미래에셋증권의 현금카드 결제업무 중지에 따라 [현금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내용을 폐지하며, 미래에셋 대우의 전자금융거래증권서비스약관 내용 중 이체서비스 내용 이관하여 (구)미래에셋증권의 입출금이체 및 대체 약관과 통합한다. ① 약정계좌 이체/대체 출금: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미약정계좌 이체/대체출금: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하지 않은 은행계좌(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입금계좌이체출금: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입금계좌 지정서비스에 따라 입금계좌로 지정된 타 금융기관계좌(지정계좌라 말함)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입금계좌대체출금: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입금계좌 지정서비스에 따라 입금계좌로 지정된 회사계		
---	--	--

좌(지정계좌라 말함)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⑤ 약정계좌 유가증권 대체: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약정한 회사계좌로 유가증권의 입고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⑥ 미약정계좌 유가증권 대체: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약정하지 않은 회사계좌로 유가증권의 입고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별첨1〉 제6조3항의 "회사가 정한 최대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다. 회사 최고한도 "사이버(PC) :1회 1억원/ 1일 5억원 "이내에서 고객이 직접 지정 보안매체별로 고객이 이체한도 지정함	〈별첨1〉 "회사가 정한 최대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보안매체 발급 수단에 따라 이체한도를 자동 부여하며(신시스템 오픈 이후 계좌개설 건만 해당), 고객이 별도 신청할 수도 있다.	● 업무 변경 ● 이체한도 표 변경함 (변경후 약관참고)
〈별첨2〉 매체 PC(Qway, Kairos, 홈페이지),ARS, 모바일	〈별첨2〉 매체 인터넷한도(HTS, 홈페이지, 모바일), ARS	● 업무변경 : 모바일한도 매체 별도 관리하지 않으며, 인터넷한도를 같이 사용함. ● 거래제한시간 : 통합 시 적용사항이

거래시간 -05:30~07:00 과 23:30~00:30은 정산작업등으로 인해 거래 불가	거래시간 -23:30~00:30은 정산작업등으로 인해 거래 불가	약관에 미반영 되어 변경함
---	--	----------------